

토론자는 사회학 분야의 사회사/역사사회학 전공자이기에 기록(관리)학에 과묵한 처지라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충실한 토론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기에, 서울기록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근거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토론자 뿐만 아니라 청중이 서울기록원의 관리 활동과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해 세세히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자생적 기록활동”은 서울기록원에 어떤 의미인가?

발표자는 제목에서 “서울의 자생적 기록활동”을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아카이브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도구로 사용해 “민간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첫째 질문은 “서울의 자생적 기록활동”이 무엇인지,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2014/1/9 제정)에 따르면 서울기록원은 “시와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투자/출연기관 및 영구기록물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교육청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실 “자생적 기록 활동”(과 활동에서 야기된 생산물)은 조례 수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그 밖에 시와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르면 “자생적 기록활동”은 (이것이 아니라도) “민간기록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여겨진다. (2) 또한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연구 요약본」(서울특별시, 2013)에서 제시한 기록의 유형을 참조하자면, “시민기록”의 하나로써 “시민,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생산한” “당대 기록”, 더 자세히 말하자면 “편지, 일기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에 기록된 각종 기록물”(위의 보고서, 2쪽 참조)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간기록(물)” 혹은 “시민기록(물)”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생적 기록활동”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토론자의 미천한 이해 수준에서, “민간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은 대상의 물리적인 부분, 즉, (이관해야 할) 대상 자체를 가리킨다. 새로운 기록원으로, 그것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서울기록원은 설문원(2015)이 제출한 문장에 동의하리라 생각된다.

“기록을 공동체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스스로 돌볼 권한을 부여하고, 기록관리 전문직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유산과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설문원, 2015: 156쪽)”

정리하자면, 이전까지 시도한 “물리적 수집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집대상과의 “관계 만들기”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즉, 서울기록원은 “자생적 기록활동”이라는 수집 대상을 발굴하고자 하며, 수집의 대상을 기록이 아닌 기록활동으로, 서울기록원 차원에서 수집활동과 결과를 “보유와 소장”이 아닌 “연계와 협력”으로 변경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적 기록활동”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다. 이해준(2012)은 (아카이브는) ‘지방’과 ‘민간’의 ‘근/현대’ 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역사학계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기록원을 염두에 두고) 사학계가 ‘지역사’나 ‘민중생활사’에 가지는 상황에서 ‘근/현대사 자료’, ‘생활문화사 자료’, ‘구술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원의 확대’를 수집의 우선 숙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서울기록원이 제시한 “자생적 기록활동”은 무엇인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 “자생적”이란 말은 역사학의 요구가 아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요구로 생각된다. 공공기록이 아닌 민간기록·시민기록의 하나지만, (공공기록의 요구나 지원에 의하게 아닌) 시민·조직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기록하는 활동과 기록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다. 엄밀하게 다듬어진 용어는 아니며, 아래 [표1]에서 나눈 유형을 근거로 할 때, 4와 6과 7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직 “자생적 기록활동”의 의미는 모호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초기의 시도이자 하나의 실험이니, 보다 세밀해지리라는 기대를 밝히는 것으로 일갈하겠다.) 현재 “자생적 기록활동”이라 불리는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기록의 종류(유형)와 함께 생산자를 통칭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록	유형	생산자
1	문서류	문서	?
2	1985년 이후의 아파트-행정-관계 문서, 도면 등	문서, 도면, 박물	둔촌주공아파트 주민
3	안산의 세월호 박물(과 기록물)	박물, 문서, 사진	세월호 유가족 및 단체
4	(행정에서 보관·수집하지 않은) 행정에서 생산한 간행물, 지도와 사진	간행물, 지도, 사진	모 지역 개발 기록, 용산문화원의 예
5	해외 아카이브의 조사를 통해 발굴한 자료	문서(행정문서), 사진, 동영상	서울대 인권센터 위안부 연구팀 등
6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책사업의 자료	음성파일, 문서(녹취록), 동의서	서울문화재단의 메모리 인 서울 등
7	(서울시 산하기관의 지원을 토대로 수집한) 마을공동체가 생산한 자료	문서, 도면, 사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해방촌아카이브 등
8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된) 지역 단위 신문과 잡지	간행물(신문, 잡지)	지역 신문과 잡지

[표 1] 발표자료에서 볼 수 있는 기록의 유형

첫째, 서울기록원은 기록의 유형만큼이나 생산자의 유형을 보다 세세히 나눌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에서는 “공공, 협치, 민간”의 셋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협치”와 “민간”의 경우, 그 부분이 모호할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의 기록활동(과 기록)과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시민조직의 기록활동(과 기록, 예를 들면 둔촌주공아파트)를 각각 “협치”와 “민간”으로 구분한게 타당한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면, 현 시점에서 “공공”과 “민간”이라는 틀에 대한 재고까지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쨌거나 서울기록원은 우선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연구자로서 기록원은 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여긴다.) 서울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써 행정문서의 누락분을 통해 공공아카이브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위의 [표 1]에서 4번 항목은

행정에서 보관·수집하고 있지 않은 행정기록의 수집인데 방치된 기록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자생적 기록활동”과는 다른 범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서울기록원의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을 계획한 건 없는지, 몇 차례의 발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축적한 방법은 무언지 묻습니다.)

3. 디지털 아카이브와 민간협력

“자생적 기록활동”의 주체에게 디지털아카이브는 어떤 도구로 여겨질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길 서울기록원에 요구한다. (경험을 비추어보면) 시민·조직에게 디지털아카이브는 기록의 방법을 알 수 있고 기록을 전시하는 장소로 여겨질 것이다. 민간협력을 구축할 때, 한계 뿐만 아니라 강점을 꾸준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발표자는 민간협력의 근거를 “자생적 기록활동”과 그 주체들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서울기록원의 불가결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협력의 장점이 무엇인지 역시 설명해야 한다. “자생적 기록활동”의 긍정성을 “스스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고 설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점을 제기하며 마칠까 한다. 바로 디지털아카이브가 단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표준화된 웹-공간과 표준화된 기록 방법을 사회에 제공하는 일은 시민·조직이 기록할 때의 문법을 제공하는 일과 같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서울기록원은 ‘문법’을 제공한다지만, 기록방법의 다양성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¹⁾ 사회적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기획·제작·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유연함을 잊지 않길 기대한다. 부디 세심한 도구를 제작해주길 기대한다.

1)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흡수는 기록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 기록을 수집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완벽한 질서를 구현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너무나 큰 이야기지만,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되는 것들이 존재한다.